

##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 II: 인과모형 개발\*

김상욱\*\*

### 1. 연구의 목적

1998년 12월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6%로써(통계청, 1998) 이제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고령화사회<sup>1)</sup>의 문턱에 바짝 다가섰다. 고령화사회가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 가운데 가장 주시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마도 노인부양의 문제일 것이다. 노인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정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들(Cowgill, 1986; Pearlin et al., 1995)을 통하여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핵가족화, 도시화, 취업구조의 변화 등)(임종권 외, 1985; 성규탁, 1990; 박재홍, 1993; 장경섭, 1993) 및 가치관의 변화(이가옥 외, 1990; 최성재, 1995)와 결부됨으로써 그 심각성을 점차 더해 가는 양상이다.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의 형성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사적 부양

\* 이 논문의 초안은 1999년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4. 23~24, 경주)에서 발표되었다. 논문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절한 비판 및 수정을 제시한 학회 참석자들 및 의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1)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7%를 상회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규정하고 14%를 상회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규정한다.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장인협·최성재, 1994) 우리 사회의 경우 노인부양 문제는 상당부분 가족구성원들의 책임으로 간주됨으로써 급증하는 부양부담을 개개 가족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성을 더해 가는 가족내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실증적 진단 및 처방의 일환으로 필자(김상욱·양철호, 1998)는 가정내의 제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로 구성된 부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인과모형을 제시·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 논문[이하 상계연구(1998)]에서도 명확히 지적된 바 있듯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경험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제시된 인과 모형은 그 시안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타 주요 외생변인들(*exogenous variables*)이 배제된 미설정오류(*misspecification error*)를 범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았다. 이는 물론 상계연구(1998)가 원래의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몇몇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미설정된 채 모형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경험적 자료가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상기할 때, 미설정오류의 가능성은 모형구성상 근본적 수정을 요하는 사안이다. 둘째, 상계연구(1998)에서 제시된 피부양자(혹은 부양대상자)<sup>2)</sup>에 따른 부양행위 결정요인의 비교는 시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질적인 부양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보다는 시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생존해 있는 이질적인 부양자들까지도 일부 포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 점에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대등한 비교(*equivalent comparison*) 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원래의 자료에서 시부모가 모두 생존한 동질적 부양자의 수가 분석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상당히 제약할 정도로 적었다는 사실에 연유하고는 있으나 이상적인 비교가 아님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개선을 요하는 사안이다. 셋째, 제시된 모형의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s*,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에 대한 측정방식에

2) 상계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피부양자는 시부모를 그리고 부양자는 자부(子婦)를 지칭한다. 부양자를 자부로 한정시킨 이유는 가족내 부양전담자(*primary caregiver*)가 딸인 경우가 대부분인 서양사회(Brody, 1990; Abel, 1991)와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계직계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동양사회에서는 아들과 함께 부양의 공유된 책임을 부여받는 며느리가 전통적으로 가정내 노부모부양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양전담자라는 사실(최재석, 1982; 한남제, 1989; 성규탁, 1995)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선의 소지가 있었다. 개념적으로 볼 때,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노인부양이라는 동일한 현상과 관련된 심리적 차원의 태도와 행태적 차원의 행위로 구분되므로 각 개념에 대한 측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척도가 제시된 상태에서 부양자의 당위적 의식과 실천적 행태로 구분되어 조작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계연구(1998)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화된 방식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두 내생변인의 측정속성(measurement properties)에 대한 대등한 비교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측정속성 자체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경향을 보였다.<sup>3)</sup>

요컨대, 미설정오류의 가능성, 이질적 부양자집단의 포함으로 인한 피부양자 사이의 대등치 못한 결과비교 그리고 측정방식의 문제점은 상계연구(1998)가 지니는 태생적 한계로써 개선을 요하는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노인부양의 인과기제(causal mechanisms)에 대한 더 차원 높은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와 관련을 지니는 여타의 주요 외생변인들이 추가적으로 설정된 더욱 포괄적(comprehensive) 인과모형이 제시될 것이며, 피부양자와 연관된 부양자의 인구학적 속성을 동질화시킴으로써 피부양자에 따른 결과비교의 대등성이 보장될 것이고, 내생변인들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방식이 사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개선작업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물론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상계연구(1998)의 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가늠할 수 있는 문제이겠으나, 도입된 개선은 최소한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도 더 견고(robust)하게 확보케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부부양자와 시모부양자의 인구학적 속성을 동질화시킴으로써 피부양자에 따른 결과비교의 대등성을 보장하려는 개선작업은 시부부양모형과 시모부양모형이 과연 별도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

3) 양대 측정속성 가운데 하나인 신뢰도로 평가하여 볼 때, 상계연구(1998)에서 나타난 부양태도의 신뢰계수( $\alpha$ )는 .8419(시부모형) 및 .8450(시모모형)이었으며, 부양행위의 신뢰도는 각기 .7355(시부모형) 및 .7248(시모모형)이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적절한(adequate) 정도라고는 말 할 수 있어도 만족스러운(satisfactory) 정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만족스럽지 못한 신뢰도는 표준 오차(standard errors)를 증대시키고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희석(attenuate) 시킴으로써 상관관계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뿐 아니라 구조계수(structural coefficients)의 통계적 추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원론적 사실 이외에도, 양질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확보가 LISREL분석의 필수적 선행조건(Jöreskog and Sörbom, 1993)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게 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부부양 및 시모부양에 대한 별도의 분석결과 부양행위의 결정요인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시부와 시모에 대한 별개의 모형이 구성될 필요를 제시하는 것이겠으나, 만일 두 결과간에 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시부부양과 시모부양이 매우 유사한 선행요인 (*antecedents*)을 공유하는 현상으로써 동일한 단일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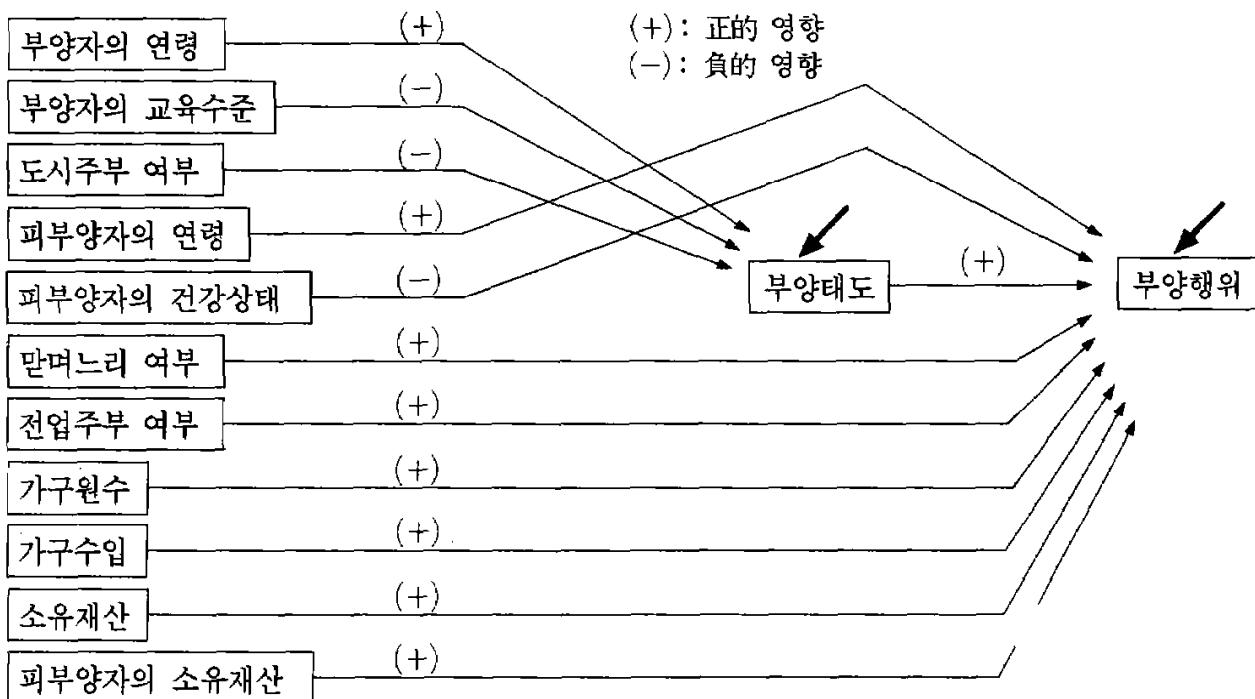
## 2. 이론적 배경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은 공변량구조모형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써 상계연구(1998)에서 제시된 모형의 기본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타의 주요 외생변인들이 추가적으로 설정된 것이다.<sup>4)</sup>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정된 외생변인들은 부양자가 도시주부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인 (*dummy variable*) 및 전업주부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인, 가구수입, 소유재산 그리고 피부양자의 소유재산 등 5가지로써, 이를 변인들은 대체로 부양자의 거주지역 (도시 대 농촌) 및 가사전담 정도 그리고 가구의 경제력을 가늠케 하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이다.

모형에 설정된 외생변인들에 대한 세부적 설명에 앞서, 제시된 모형의 기본특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첫째, 모형의 변인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심리학적 구성체 (*psychological construct*)가 일부(예, 부양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다수의 변인들이 부양자 혹은 피부양자의 심리적 태도와 무관하게 실태적 행태를 나타내는 사회학적 구성체 (*sociological constructs*)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학적 구성체 위주로 모형이 구성된 이유는 노인부양행위가 근본적으로 발

4) 상계연구(1998)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부양태도는 의식의 현대성과 전통성을 양극단 측성 (*attributes*)으로 보유하며 부양행위는 행태의 소극성과 적극성을 양극단 속성으로 보유하는 연속형변인으로써, 높은 수치들은 각기 전통적 의식 및 적극적 행태를 지칭한다. 각 변인의 속성에 대한 명명에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조작적 정의에서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부양태도는 의식의 현대성 및 전통성에 초점을 부여한 심리학적 개념임에 비하여 부양행위는 행동의 소극성 및 적극성에 초점을 부여한 행태학적 개념임을 의미한다.

&lt;그림 1&gt;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본모형



현적 속성(*emergent properties*)을 지니는 객관적·실태적 행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써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선행요인들 또한 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주관적 지향 혹은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구성체보다는 객관적 사실 혹은 실태적 행태를 나타내는 사회학적 구성체 위주로 구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5)</sup> 이 점에서 볼 때, 제시된 모형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모형이기보다는 ‘사회학적 모형’의 특성을 보유한다. 둘째, 모형의 인과경로 설정의 측면에서 볼 때 일부의 외생변인들은 부양태도라는 매개적 내생변인(*intervening endogenous variable*)을 경유하여 최종 내생변인인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침에 비하여 일부 외생변인들은 부양태도에 의해 매개됨이 없이 부양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경로가 설정되었다(<그림 1> 참조). 상계연구(1998)에서도 논의되었던 바 있듯이, 이러한 방식의 인과경로 설정은 태도(*attitude*)와 행위(*behavior*) 간의 본질적 속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부언컨대, 지속성 및 표출성의

5) 설명하고자 하는 결과변인(혹은 내생변인)이 행태학적 변인이라고 해서 원인변인(혹은 외생변인) 또한 반드시 행태학적 변인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Homans, 1974), 일반적으로 말해 심리적 현상에 대한 최적의 설명은 심리적 요인으로 가능하고 행태적 현상에 대한 최적의 설명은 행태적 요인으로 가능하다(Blau, 1964).

측면에서 태도와 행위를 구분할 때, 태도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을 지님에 비하여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변적이고 외재적인 특성을 지닌다(Fishbein & Ajzen, 1975; Schuman & Johnson, 1976). 따라서 이 연구의 부양자인 자부들이 혼입(婚入)을 통하여 시가식구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부양자 자신의 내재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은 일차적으로 심리적 구성체인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양자 자신의 지속적·내재적 특성과 관계없이 결혼 이후에 비로소 접하게 된 피부양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및 건강상태) 및 가족내의 역할(맏며느리 여부, 전업주부 여부) 그리고 상황(가구원수, 가구수입, 소유재산, 시부모의 소유재산) 등은 행태적 구성체인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경로설정은 설정이 배제된 여타의 경로들 역시 이론적 개연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것이 사실이며, 또한 경로설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할 LISREL 분석방식에 제시되는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를 근거로 인과경로의 추가적 설정 및 추정을 행함으로써 보완적 해결이 시도될 것이다.<sup>6)</sup> 이 연구에 도입된 인과경로 설정전략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폐쇄적인가의 문제는 물론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겠으나,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요인들이 상대적 지속성 및 표출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상계연구(1998)를 통해서도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제 외생변인과 내생변인 간의 이론적·가설적 인과관계를 모형에 새로이 설정된 각 외생변인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이전의 모형에 기포함된 외생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상계연구(1998:56~58)를 참조할 것].

첫째, 부양자가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인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인은 부양태도에 부적(負的) 영향을 미쳐서, 농촌주부에 비하여 도시주부가 더 현대적 유형의 부양태도를 보일 것이다. 농촌주부의 전반적 태도 및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임에 비하여 도시주부의 전반적 태도 및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경향이 있다(Cicirelli, 1983; Ogawa & Retherford, 1993)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태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아서 농촌주부들에 비

6) 모형의 인과경로설정 문제와 관련된 더 상세한 논의는 상계연구(1998, pp. 55~56)를 참조할 것.

하여 도시주부들이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부양태도를 견지하게 된다(경제기획원, 1988; 서병숙·이신숙, 1990; 통계청, 1992).

둘째, 부양자가 전업주부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인은 부양행위에 정적(正的) 영향을 미쳐서, 취업주부에 비하여 전업주부가 더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보일 것이다. 생업과 가사라는 이중부담을 동시에 떠맡아야만 하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사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와같은 상황은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행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부양행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Matthews et al., 1989; Scharlach, 1994; Doty et al., 1998). 반면에 전업주부라는 가정내 지위는 부양자를 그와같은 이중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가구수입은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쳐서, 가구수입이 높은 자부일수록 시부모를 더 적극적으로 부양할 것이다.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가구수입이 높다는 사실은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을 개연성을 제시하는 것이며(Whitlatch & Noelker, 1996), 또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노인부양의 주요 하위차원들—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신체·서비스 부양—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양가구의 고수입은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소유재산도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산을 많이 소유한 자부일수록 더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보일 것이다. 가구수입이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소유재산이 많다는 것은 노부모 부양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유재산의 정도는 적극적 부양행위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소유재산 또한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쳐서, 재산을 많이 소유한 시부모일수록 자부로부터 더 적극적인 부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자(혹은 자부)의 경제력(가구수입 및 소유재산)은 부양자가 피부양자(혹은 시부모)에 대한 부양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건의 구비 정도를 의미함에 비해서, 피부양자의 보유재산은 부양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부양노력 여하에 따라 차후에 제공받게 될 보상을 의미한다(Atchley, 1988). 요컨대 시부모의 재력은 자부로부터 적극적인 부양을 제공받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구비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부의 적극적 부양

행위를 유발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 조사 및 분석방법

#### 1) 조사 및 조사대상의 선별

제시된 모형추정을 위한 자료는 1998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조사수를 위한 표본은 각 지역을 행정구분에 따라 총화한 후 지역(혹은 총)별로 인구비례의 연령별 쿼터를 배정하고 최종적으로 무작위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의 총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이 사용되었다.<sup>7)</sup>

조사대상자의 선별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조사 대상을 “현재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써, 시부 모 가운데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며, 자신은 아직까지 며느리를 맞지 아니한 가정주부”로 한정하였다. 즉, 조사당시에 미혼이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사유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 및 20세 미만 6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 시부와 시모가 모두 사망한 사람들,<sup>8)</sup>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여 이미 며느리를 본 사람들은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피부양자를 지정함에서, 시부와 시모를 동시에 포함한 혹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대상으로 한 부양이 아닌 시부와 시모를 별도로 지정한 부양을 조사하였는데, 이처럼 시부와 시모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피부양자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분석단위를 한 개인으로 일원화하

7) 이 조사에서 사용된 자료는 상계연구(1998)의 자료와 세 가지 측면 — ① 이차자료가 아니며; ② 대상지역이 전라남도에로까지 확대되었고; ③ 전화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 — 에서 차이를 낸다.

8) 이는 시부모 가운데 한 분만 생존한 사람들도 원래의 조사에는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시부부양 및 시모부양 결과간의 대등한 비교를 기하기 위하여 이들은 차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시부모가 조사대상자와 동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서 시부모와 동거하는 주부들뿐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주부들도 모두 조사에 포함되었다.

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피부양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부양자의 태도 및 행위가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와같은 판단은 상계연구(1998)를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었다.<sup>9)</sup> 아무튼 이와 같이 선별된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시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응답자들( $n=476$ ) 및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지니는 결측치(*missing values*) ( $n=82$ )를 일률적(*listwise*)으로 제거한 후 621명이 시부 및 시모부양을 위한 최종 분석사례수로 선정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부들의 연령은 평균 34.3세이며, 수학년수는 평균 13.4세로써 고졸 혹은 초대졸 정도의 학력을 보유하며, 과반수 이상(72.9%)의 주부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약 과반수에 달하는 주부가 맏며느리(47.3%) 혹은 전업주부(46.7%)이며, 가구원수는 평균 4.3명이고, 월평균 가구총수입은 189만원 정도이며, 자신(부부)이 소유한 재산은 평균 9천만원 가량이고, 시부모가 소유한 재산은 평균 1억5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 및 시모의 평균 연령은 각각 67.4세 및 63.8세이며, 시부 및 시모의 건강상태(최소=8; 최대=16)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시부 평균=15.7, 시모 평균=13.8). 한편, 부양태도에서 시부에 대한 부양태도(최소=12; 최대=24)는 평균 15.957이어서 비교적 현대적이었으며 시모에 대한 부양태도(최소=12; 최대=24)의 평균도 16.145이어서 비교적 현대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최소=12; 최대=24) (평균=19.058) 및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최소=11; 최대=22) (평균=17.320)는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었다. 요컨대 모형추정에 포함된 주부들은 대체로 젊은 도시주부들로써, 평균적 도시가구수입을 유지하는 중산층 서민들이며, 심하게 연로하지도 않고 건강도 양호하며 경제력도 어느 정도 보유한 시부모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시부모에 대한 부양태도 자체는 현대적인 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교적 적극적인 부양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한편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와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가 동일한 선행요인을 지니는 현상이 아니라는 상계연구(1998)의 결과는 확고한 것이기보다는 제안적(*suggestive*)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된 대로 시부부양자와 시모부양자가 완벽하게 동질적인 부양자는 아니었음으로 인하여 두 결과간의 비교가 대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2) 변인측정

모형에 설정된 대부분의 외생변인들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이므로 특별히 측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의 건강상태는 일상활동수행능력(ADL)을 제시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척도가 사용되었음을 일러둔다. 한편 모형에 설정된 두 가지 내생변인인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각기 노인부양의 세 가지 차원(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신체·서비스 부양)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15가지 문항을 제시하고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상호 혼합한 변인(*composite variable*)으로 구성되었다.<sup>10)</sup> 이미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를 측정하는 척도는 본질적으로 대등한 척도로써 노인부양이라는 동일한 개념에 대한 당위적 의식과 실천적 행태의 차이로 구분·조작화되었다.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변인들은 양질의 측정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각 변인의 판별적·집합적 타당도(*discriminant-convergent validity*)를 LISREL 측정모형<sup>11)</sup>을 추정하여 평가하였을 때, 시부모형 및 시모모형 공히 건강상태 및 부양태도, 그리고 부양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몇몇 문항들<sup>12)</sup>이 미약한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s*) 혹은 불명확한 요인구조(*factor structure*)를 나타내 이들을 제외시킨 후 혼합변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의 신뢰도를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1951)의  $\alpha$ 계수로 측정하였을 때, 시부부양과 관련하여서는 건강상태 및 부양태도, 부양행위의 신뢰도가 각각 .8626, .8573, .8812이었으며, 시모부양과 관련해서는 각기 .9335, .8603, .8874로 나타났다.

10)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가 혼합변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들 변인이 다차원적 개념(*multi-facet concepts*)이기 때문이다.

11) LISREL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의 차이에 대해선 상계연구(1998, p. 61)를 참조할 것.

12) 구체적으로, 문제시되는 문항은 시부모형의 경우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2문항, 부양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3문항, 부양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3문항이며, 시모모형의 경우 건강상태 3문항, 부양태도 3문항, 부양행위 4문항이었다.

### 3) 자료분석

제시된 모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LISREL8(Jöreskog and Sörbom, 1993)의 ML(maximum likelihood) 추정절차를 통하여 행하였다. LISREL분석방식이 사용된 이유로는 복수의 내생변인을 포함하는 경로모형의 추정에 LISREL분석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 이외에도 이 연구의 핵심 변인인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가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부양행위에 대한 각 외생변인의 전체영향을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 부양행위에 인과적 영향을 행사하는 외생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시된 이론적 모형이 실제의 경험적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모형부합지(model fit statistics)를 통하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사실 등이 동시에 고려되었다.

## 4. 결 과

모형추정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모형추정전략을 간략히 언급하면, 이 연구에서는 기본모형(<그림 1>)을 먼저 추정한 후 기본모형에서 추정이 허용되지 않았던 인과경로를 가운데 주요한 경로들을 기준에 추정되었던 모형들에 대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하나씩 부가적으로 자유화(free up) 시킴으로써 최적모형인 수정모형(revised model)을 최종적으로 추정하였다(모형추정전략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상계연구(1998, p. 62)를 참조할 것). 이제 시부부양 및 시모부양 각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시부'부양모형 추정결과

시부부양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1> 및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기본모형(<그림 1>) 추정결과를 토대로 기준에는 추정이 허용되지 않았던 인과경로를 하나씩 부가적으로 자유화한 결과 세 가지 경로—도시주부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 시부연령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구원수가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가 이론적 개연성이 높으며 수정지표(MI)도 현저하다는 이유에서 순차적으로 새

〈표 1〉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LISREL(표준화계수) 추정결과: 시부부양編 (N=621)

## — 수정모형 —

변인	부양태도		부양행위	
	상관관계 계수	구조 계수 <sup>1)</sup>	상관관계 계수	구조 계수 <sup>1)</sup>
내생변인	부양태도	-	-	.398*** .367***
외생변수	연령	.346***	.333***	-
	교육수준	-.574***	-.523***	-
	도시주부	-.103*	-.059	-.151** -.119**
	시부 연령	.156**	-.092*	.139** .094*
	시부 건강상태	-	-	-.039 -.057
	맡며느리	-	-	.215*** .137***
	전업주부	-	-	-.020 .022
	가구원수	.247***	.075*	.260*** .091*
	가구수입	-	-	.362*** .358***
	소유재산	-	-	.153*** .043
	시부모 소유재산	-	-	.075* .093**
R <sup>2</sup>		.423		.480
χ <sup>2</sup>	2,474.801(자유도=762), p<.000			
모형부합치	GFI=.911; AGFI=.884; NFI=.745; CFI=.847; IFI=.856			

주 : 1)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 p<.05, 단측검증. \*\* p<.01, 단측검증. \*\*\* p<.001, 단측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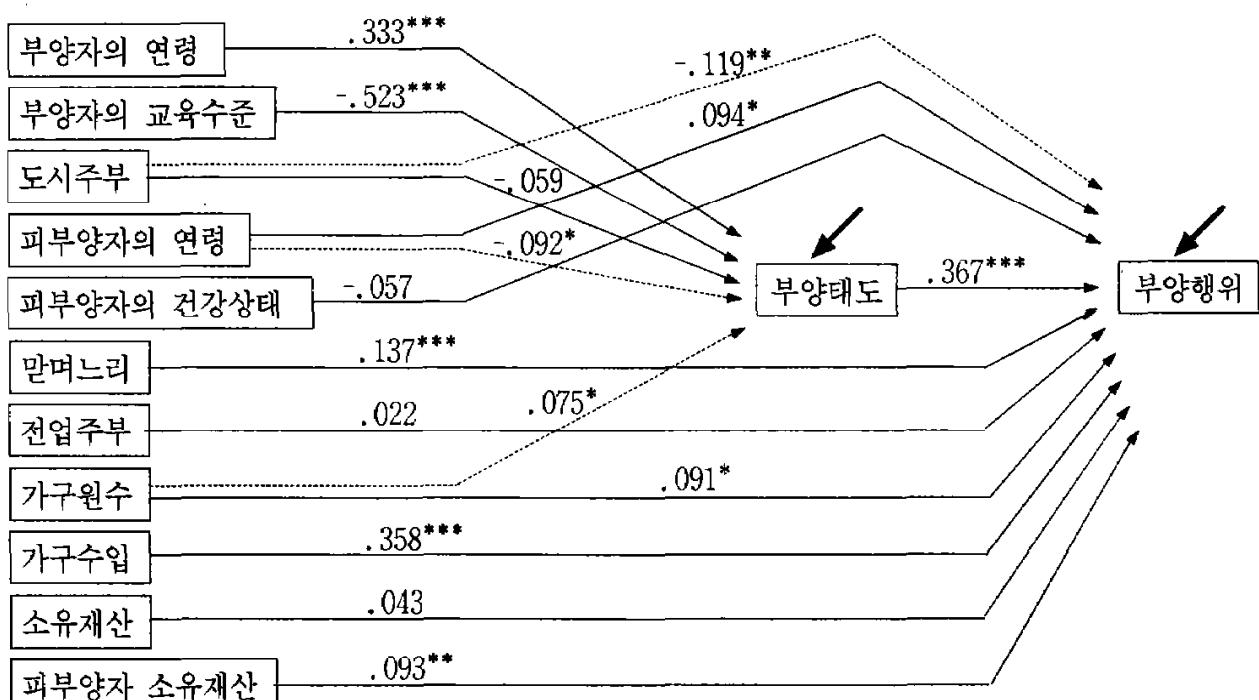
로이 추정되었다.<sup>13)</sup> 먼저 부양태도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양태도에 경로가 설정된 5가지 외생변인 가운데 4가지 변인—즉, 연령( $\beta=.333$ ), 교육수준( $\beta=-.523$ ), 시부 연령( $\beta=-.092$ ), 가구원수( $\beta=.075$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sup>14)</sup> 즉, 여타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연령이 높으면 교육수준이 낮고

13) 세 가지 인과경로에 대한 부가적 추정에도 불구하고 LISREL측정모형에 일정한 부차적 수정을 가할 경우 각 내생변인의 설명력( $R^2$ ) 및 모형부합치가 향상되고 구조계수의 추정치도 변화할 가능성 이 있음을 고려하여 내생변인들간의 상호연관된 측정오차 및 외생변인과 내생변인간의 상호연관된 측정오차(*correlated measurement errors*)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분석결과 측정모형에 가해진 부차적 수정이 실질적으로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변인들간의 측정오차들이 상호연관되도록 허용하지 않은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간주하였다(측정 오차들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상계연구(1998, p. 64)를 참조할 것).

14) 한편, 시부 연령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r=.156$ )와 유의미한 인과관계( $\beta=-.092$ )의 부호가 서로 뒤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적 모조'(statistical artifac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부의 연령이 낮으며 가구원수가 많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부일수록 시부에 대한 부양태도가 전통적이었다. 도시주부는 부양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r=-.103$ )는 지니나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은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태도에 대한 도시주부의 영향이 모형에 포함된 여타 외생변인들에 의하여 상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양행위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양태도( $\beta=.367$ ) 및 도시주부( $\beta=-.119$ ), 시부 연령( $\beta=.094$ ), 맘느느리( $\beta=.137$ ), 가구원수( $\beta=.091$ ), 가구수입( $\beta=.358$ ), 시부모 소유재산( $\beta=.093$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부의 부양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농촌주부일수록, 시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부가 맘느느리일수록,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시부모가 재산을 많이 소유했을수록 자부의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는 적극적이었다. 시부 건강상태와 전업주부 여부는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인과적 영향도 없었으며, 자부의 소유재산은 부양행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r=.153$ )는 지니나 인과적 영향은 없어서 이 변인의 영향이 여타 외생변인들의 영향에 의하여 상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수정모형<sup>1)</sup> : 시부부양편(N=621)



주 : 1) 실선은 기본모형에서 설정된 인과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수정모형에서 추가적으로 설정된 경로를 나타냄. 더 상세한 자료는 〈표 1〉 및 〈표 2〉를 참조할 것.

수정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인들 중에는 부양태도라는 매개적 내생변인을 통하여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변인도 있음을 고려하여 부양행위를 최종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각 외생변인의 부양행위에 대한 직접·간접·전체 영향을 분리(decompose)시키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시도되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양행위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한 외생변인들을 그 영향의 절대적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부양태도(.367), 가구수입(.358), 교육수준(-.192), 도시주부(-.140), 맏며느리(.137), 연령(.122), 가구원수(.118), 그리고 시부모 소유재산(.093)이다. 이와같은 결과를 각 변인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를 연결하는 제3의 매개변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태도의 전체영향은 전적으로 직접 영향(.367)만으로 구성되며,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방향이다.<sup>15)</sup> 둘째, 가구수입의 전체영향은 간접영향이 없이 직접영향(.358)만으로 구성되며 그 영향의 방향은 예측된 바와 같이 정적이다. 셋째, 교육수준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이 없이 간접영향(-.192)만으로 구성되며 그 영향의 방향은 부적인 편, 이처럼 부적 영향이 나타난 이유는 교육수준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부적 단위영향(net effect) (-.523)과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정적 단위영향(.367)이 상호 결합된 때문이다. 넷째, 도시주부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119)과 간접영향(-.022) 모두로 구성되는데, 간접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영향만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지닌다. 다섯째, 맏며느리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137)만으로 구성되며, 그 영향의 방향은 예측된 대로 정적이다. 여섯째, 연령의 전체영향은 간접영향(.122)만으로 구성되며 예측된 대로 정적 방향이다. 일곱째, 가구원수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 (.091)과 간접영향(.028) 모두로 구성되는데, 이를 모두 예측된 대로 유의미한 정적

15) 앞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부양태도는 심리학적 구성체이며 부양행위는 행태학적 구성체라는 점에서 볼 때, 두 변인이 이론적·개념적으로 구분됨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이들이 경험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구성체들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두 변인을 포함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 시도되었는데, 검증결과 2-요인모델(two-factor model)이 지지됨으로써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개념적으로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구성체이며 두 변인간에는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적으로 유사한 구성체들이 한 모형에 동시에 설정된 상태에서 모형이 추정될 경우 유발되는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이 연구에서는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2〉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의 직접·간접·전체영향을 분리한 LISREL(표준화계수)  
경로분석결과<sup>1)</sup> : 시부부양편(N=621)

결정요인		직접영향	간접영향 <sup>2)</sup>	전체영향 <sup>3)</sup>
내생변인	부양태도	.367***	-	.367***
외생변인	연령	-	.122***	.122***
	교육수준	-	-.192***	-.192***
	도시주부	-.119**	-.022	-.140***
	시부 연령	.094*	-.034*	.060
	시부 건강상태	-.057	-	-.057
	맡며느리	.137***	-	.137***
	전업주부	.022	-	.022
	가구원수	.091*	.028*	.118**
	가구수입	.358***	-	.358***
	소유재산	.043	-	.043
	시부모 소유재산	.093**	-	.093**

주 : 1)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간접영향 = (외생변인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

3) 전체영향 = 직접영향 + 간접영향.

\* p<.05, 단측검증. \*\* p<.01, 단측검증. \*\*\* p<.001, 단측검증.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시부모의 소유재산은 직접영향(.093)만으로 구성되는데, 이 또한 예측된 바와 같이 정적이다.

요컨대, 시부모형에 대한 추정결과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양태도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구수입, 교육수준, 도시주부, 맡며느리, 연령, 가구원수 그리고 시부모 소유재산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시부에 대하여 전통적인 부양태도를 지니는 자부일수록,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자부일수록, 농촌에 거주하는 주부일수록, 맡며느리일수록, 연령이 높은 자부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시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자부는 시부를 더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2) "시모"부양모형 추정결과

시모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시모모형에서도 기본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모형들이 연속적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결과 두 가지 인과경로—즉, 연령이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주부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가 수정지표(MI)가 현저하며 이론적 개연성 또한 높다는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추정되었다.<sup>16)</sup>

먼저 부양태도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경로가 설정되었던 세 가지 외생변인 가운데 도시주부를 제외한 두가지 변인인 연령( $\beta=.281$ )과 교육수준( $\beta=-.521$ )이 부양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부의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모에 대한 부양태도가 전통적이었다. 다음으로 부양행위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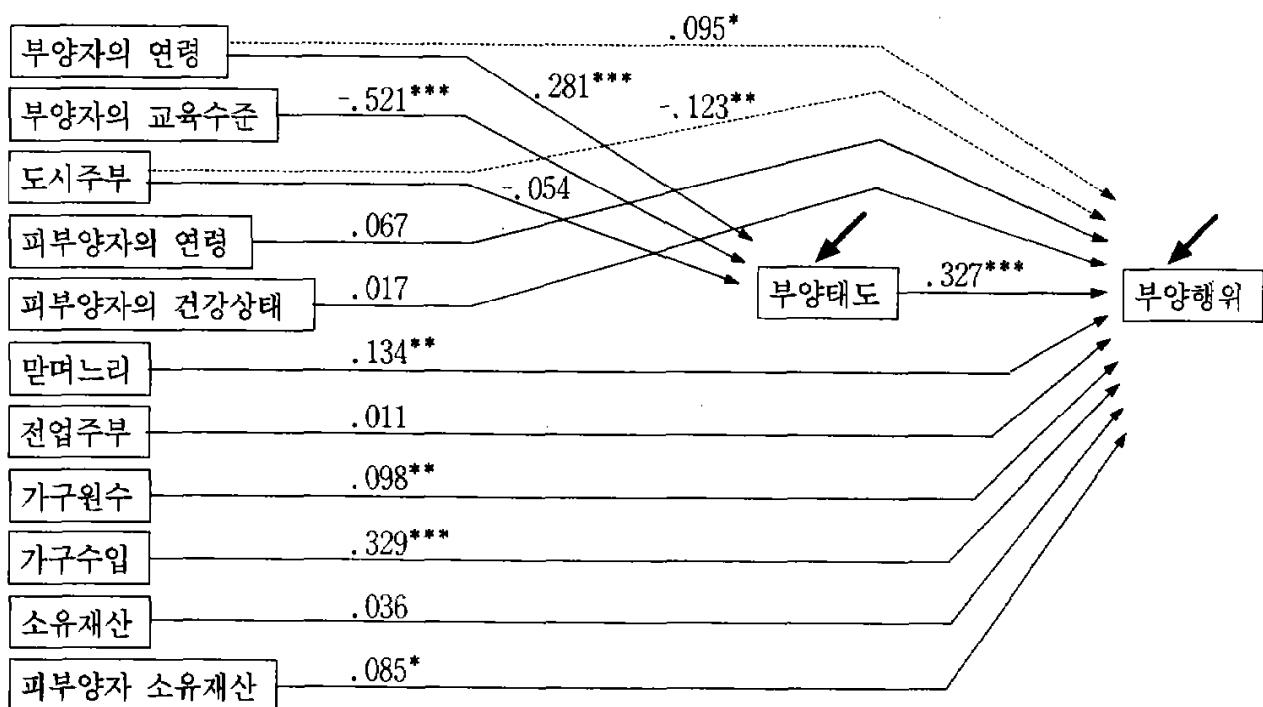
〈표 3〉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LISREL(표준화계수) 추정결과: 시모부양편 ( $N=621$ )  
—수정모형—

변인		부양태도		부양행위	
		상관관계 계수	구조 계수 <sup>1)</sup>	상관관계 계수	구조 계수 <sup>1)</sup>
내생변인	부양태도	-	-	.392***	.327***
외생변인	연령	.326***	.281***	.332***	.095*
	교육수준	-.559***	-.521***	-	-
	도시주부	-.101*	-.054	-.140**	-.123**
	시모 연령	-	-	.163***	.067
	시모 건강상태	-	-	-.004	.017
	맡며느리	-	-	.219***	.134**
	전업주부	-	-	-.030	.011
	가구원수	-	-	.265***	.098**
	가구수입	-	-	.357***	.329***
	소유재산	-	-	.151***	.036
시부모 소유재산		-	-	.066	.085*
$R^2$			.386		.465
$\chi^2$		1,853.886 (자유도=681), $p<.000$			
모형부합치		GFI=.930; AGFI=.911; NFI=.779; CFI=.889; IFI=.892			

주 : 1)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  $p<.05$ , 단측검증. \*\*  $p<.01$ , 단측검증. \*\*\*  $p<.001$ , 단측검증.

16) 시부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모모형에서도 변인들간의 상호 연관된 측정오차에 대한 분석이 시도 되었는데, 분석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부차적 수정은 수정모형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경우에도 측정오차가 상호 연관되도록 허용하지 않은 모형(수정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3>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수정모형<sup>1)</sup> : 시모부양편(N=621)

주: 1) 실선은 기본모형에서 설정된 인과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수정모형에서 추가적으로 설정된 경로를 나타냄. 더 상세한 자료는 <표 3> 및 <표 4>를 참조할 것.

을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경로가 설정되어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보였었던 부양태도 ( $\beta = .327$ ) 및 맏며느리 ( $\beta = .134$ ), 가구원수 ( $\beta = .098$ ), 가구수입 ( $\beta = .329$ ) 그리고 시부모 소유재산 ( $\beta = .085$ ) 이외에도 새로이 추정된 두 가지 변인인 연령 ( $\beta = .095$ )과 도시주부 ( $\beta = -.123$ )가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나타냈다. 즉, 시모에 대한 부양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농촌주부일수록, 맏며느리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시부모가 재산을 많이 소유했을수록 자부는 시모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부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모모형에서도 경로분석이 시도되었는데 (<표 4>), 시모부양행위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한 변인들은 가구수입 (.329), 부양태도 (.327), 연령 (.186), 교육수준 (-.170), 도시주부 (-.140), 맏며느리 (.134), 가구원수 (.098), 시부모 소유재산 (.085)의 순이었다. 각 변인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가구수입의 전체영향은 간접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영향 (.329)만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영향의 방향은 예상된 대로 정적이다. 둘째, 부양태도의 전체영향도 직접영향 (.327)만으

〈표 4〉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의 직접·간접·전체영향을 분리한 LISREL(표준화계수)  
경로분석결과<sup>1)</sup> : 시모부양편(N=621)

결정요인		직접영향	간접영향 <sup>2)</sup>	전체영향 <sup>3)</sup>
내생변인	부양태도	.327***	-	.327***
외생변인	연령	.095*	.092***	.186***
	교육수준	-	-.170***	-.170***
	도시주부	-.123**	-.018	-.140***
	시모 연령	.067	-	.067
	시모 건강상태	.017	-	.017
	맡며느리	.134**	-	.134**
	전업주부	.011	-	.011
	가구원수	.098**	-	.098**
	가구수입	.329***	-	.329***
	소유재산	.036	-	.036
	시부모 소유재산	.085*	-	.085*

주 : 1)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간접영향=(외생변인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

3) 전체영향=직접영향+간접영향.

\* p<.05, 단측검증. \*\* p<.01, 단측검증. \*\*\* p<.001, 단측검증.

로 구성되며 예측된 대로 정적 영향을 지닌다. 셋째, 연령의 전체영향은 유의미한 직접영향(.095)과 간접영향(.092) 모두로 구성되며, 두 영향 모두 정적 방향이다. 넷째, 교육수준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이 없이 간접영향(-.170)만으로 구성되며, 그 영향의 방향은 부적이다. 다섯째, 도시주부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123)과 간접영향(-.018) 모두로 구성되지만, 간접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직접영향만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다. 여섯째, 맡며느리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134)만으로 구성되며, 정적 방향이다. 일곱째, 가구원수의 전체영향도 직접영향(.098)만으로 구성되며 정적 방향이다. 마지막으로 시부모 소유재산의 전체영향 또한 직접영향(.085)만으로 구성되는 정적 영향이다.

요컨대 시모모형에 대한 추정결과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가구 수입 및 부양태도, 연령, 교육수준, 도시주부, 맡며느리, 가구원수, 그리고 시부모 소유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부양태도를 보유할 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주부일수록, 맡며느리일수록, 가

구원수가 많을수록, 시부모가 소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자부의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가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3) 시부 및 시모부양모형 추정결과의 비교 및 해석

이상에서 제시된 시부 및 시모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이 피부양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논의의 편의상 모형에 설정된 외생변인의 순서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부양자의 연령은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비록 연령이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방식에서는 두 모형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즉, 시부모형에서는 간접영향만 존재하였으나 시모모형에서는 직접영향도 존재하였다—연령이 부양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부양행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요컨대 연령이 높은 자부일수록 시부모에 대한 부양태도가 전통적이며 부양행위 또한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양자의 연령이 모형에 설정되었던 이유는 연령에 따른 부양 관련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Lang & Brody, 1983; 임종권 외, 1985; Hagestad, 1987; 한남제, 1989),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부양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경감된다는 Schulz et al. (1988)의 경험적 발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부양자의 교육수준도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교육수준이 부양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부양행위에도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요컨대 학력이 높은 자부일수록 시부모에 대한 부양태도가 현대적이며 부양행위 또한 소극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학력이 높은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현대적 유형의 부양가치관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임종권 외, 1985; 서병숙·이신숙, 1990). 한편 학력에 따른 부양태도의 이와같은 차이는 학력에 따른 사회적 고정관념의 차별적 영향과도 관련되어서 노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함유된 고정관념의 영향이 고학력주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한다(Hendricks & Hendricks, 1981). 그 결과 학력이 높은 주부들은 전통적

가치관에 얹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근거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대적 유형의 부양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부양자의 거주지역 또한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도시주부 여부는 부양태도에 거의 매개됨이 없는 상태에서 부양행위에 부적 영향을 지닌다는 사실이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요컨대, 농촌주부들에 비하여 도시주부들이 시부모를 더 소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앞의 이론적 논의(<그림 1>)에서 원래 이 변인의 부양행위에 대한 영향은 부양태도에 의하여 매개된 것일 뿐 부양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이 변인이 부양행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직접적인 것이 대부분(시부모형=85.0%; 시모모형=87.9%)이고, 부양태도에 미치는 단위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sup>17)</sup> 부양태도에 의하여 매개되는 간접영향조차도 유의도를 상실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부양자의 거주지역이 도시인가 농촌인가의 여부는 주부들의 부양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부양수행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에서는 여성중심으로 고부가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농사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음으로 인하여 도시와는 달리 갈등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능적 고부관계’의 양상을 떤다는 한경혜(1992)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피부양자의 연령은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비록 이 변인이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방식에서는 두 모형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즉, 시부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직접영향과 부적 간접영향이 공존하여 서로 상쇄되었으나 시모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직접영향만이 존재하였다—이 변인이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전체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요컨대 시부모의 연령에 따른 자부의 부양행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부양자의 연령이 모형에 설정된 이유는 연령증가에 따라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지원 혹은 물리적 거동 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더 많은 욕구

17) 한편, 도시주부의 부양태도에 대한 단위영향은 두 모형 공히 기본모형에서는 유의미하였으나(시부모형  $\beta = -.075^*$ ; 시모모형  $\beta = -.071^*$ ) 수정모형에서 유의도를 상실하였다.

와 도움의 필요성이 제기될 뿐 아니라(Atchley, 1988; Stoller & Pugliesi, 1989; Cox, 1993; Kinney, 1996) 그같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주부양자(혹은 자부)에로 한정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게 됨으로써(Gallo, 1982; Antonucci, 1990; Antonucci et al., 1996) 자부의 적극적 부양행위가 유발될(이가옥 외, 1994)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이와 같은 관계가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피부양자의 연령과 부양행위가 상호간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피부양자의 건강상태 또한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건강상태는 부양태도에 의하여 매개되는 간접영향이 없을 뿐더러 부양행위에 대한 직접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이 두 모형에서 공히 발견되었다. 요컨대, 시부모의 건강상태에 따른 자부의 부양행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부양자의 연령이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피부양자의 심신기능의 저하는 일상생활::력의 약화 및 상실을 초래하고(Shanas & Maddox, 1985; Kane & Kane, 1987) 의존도를 증가시키며(Streib & Beck, 1980; Whitlatch & Noelker, 1996)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자부의 적극적 부양행위를 유발할(이가옥 외,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음으로써 이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시부모의 건강상태와 부양행위가 무관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sup>18)</sup>

한편 피부양자의 특성을 대변하는 두 변인인 연령 및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인과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의 표본에 고유한(*sample-specific*)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 포함된 시부모들이 70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시부 63.0%; 시모 80.5%)으로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극히 일부(시부 5.3%; 시모 2.7%)에 지나지 않았고 이들의 건강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으며, 따라서 이 변인들이 지니는 변량이 상당 부분 한정된(*restricted*) 경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 피부양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는 밀접한 연관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모형추정에 다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시부모형  $r=-.125$ ; 시모모형  $r=-.097$ )는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그러한 문제의 가능성에 심각하지 않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여섯째, 맏며느리 여부는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맏며느리 여부는 부양태도에 매개됨이 없이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요컨대 차남 이하 서열의 차자 며느리들에 비하여 맏며느리가 시부모를 더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통적 장자부양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남편이 장자인 맏며느리라는 가정내의 지위는 그에 수반하는 일차적 부양책임을 동반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남부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종권 외, 1985; 이가옥 외, 1990)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맏며느리의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가정내 의무가 강력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부양행태가 유발된다.

일곱째, 전업주부 여부는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이 변인은 부양태도에 의하여 매개되는 간접영향이 없을 뿐더러 부양행위에 대한 직접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이 두 모형에서 공히 발견되었다. 요컨대 전업주부 여부에 따른 자부의 부양행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변인이 모형에 설정되었던 이유는 생업과 가사라는 이중부담을 동시에 떠맡아야만 하는 취업주부의 경우와 달리 가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은 자부를 이중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시부모에 대한 적극적 부양행위를 유발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 이었으나, 분석결과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이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전업주부 여부가 부양행위와 인과성을 지니지 않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가구원수는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비록 가구원수가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방식에서는 두 모형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즉, 시부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이 모두 존재하였으나 시모모형에서는 직접영향만이 존재하였다—이 변인이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전체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로써 가구원수가 많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부일수록 시부모를 적극적으로 모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규모가족에서와 달리 대규모가족의 경우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규범적 기대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서(Antonucci et al., 1996) 부양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 적극적인 부양행태를 보이게 된다(송현애, 1986; 서병숙·이신숙, 1990; 이가옥 외, 1994).

아홉째, 가구수입은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가구수

입은 부양태도에 매개되지 않고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로써 수입이 높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부일수록 시부모를 적극적으로 모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론적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고소득 가구의 경우 시부모에게 부양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이와같은 여건은 부양행위를 구성하는 주요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고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소득가구의 자부들이 저소득가구의 자부들에 비하여 부양수행도가 높다는 사실은 서병숙과 이신숙(1990)에 의하여서도 경험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열째, 부양자의 소유재산은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이 변인은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태도에 의하여 매개되는 간접영향이 없을 뿐더러 부양행위에 대한 직접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대, 재산 소유정도에 따른 자부 부양행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초에 이 변인이 모형에 설정되었던 이유는, 가구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유재산이 많을 경우 시부모 부양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잘 구비되어 적극적 부양행위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으나 분석결과 예상된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최종 외생변인인 피부양자의 소유재산은 두 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이 변인은 부양태도에 매개됨이 없이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sup>19)</sup> 이로써 재산을 많이 소유한 시부모일수록 자부로부터 더 적극적인 부양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시부모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현재적 부양의 대가로 미래에 제공받게 될 보상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자부의 부양수행도를 고양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는 재산을 많이 소유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자식들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이가옥 외, 1994) 노인이 재산상속을 최대한 미루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임종 순간까지 자식들로부터 잘 부양받기 위해서(한국방송공사

19) 한편, 부양자의 가구수입 및 소유재산, 그리고 피부양자의 소유재산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님으로써 다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부양자의 가구수입과 소유재산간의  $r = .237$ ; 부양자의 가구수입과 피부양자의 소유재산간의  $r = .049$ ; 부양자의 소유재산과 피부양자의 소유재산간의  $r = .035$ —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KBS), 1999)라는 최근의 보고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설정된 두 내생변인인 부양태도와 부양행위의 관계에서도 두 모형간에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요컨대 부양과 관련하여 전통적 태도를 견지하는 자부일수록 시부모를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차원의 태도와 행태적 차원의 행위는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Andrews & Kandel, 1979). 비록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간의 관계(시부모형  $r = .398$ ,  $\beta = .367$ ; 시모모형  $r = .392$ ,  $\beta = .327$ )가 정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계의 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타의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노부모부양에서도 태도와 행위간에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논의(Brody et al., 1983) 및 경험적 발견들(임종권 외, 1985; 서병숙·이신숙, 1990; 김상욱·양철호, 1998)과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두 모형간의 비교결과를 종합할 때, 시부 및 시모모형 모두에서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비록 각 외생변인(및 매개적 내생변인)이 부양행위에 대하여 지니는 인과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에서는 약간의 서열차가 존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결정요인이 발견되었다. 즉, 부양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거주지역, 맏며느리 여부, 가구원수, 가구수입, 피부양자의 소유재산 그리고 부양태도가 시부모에 대한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부언컨대, 시부모에 대한 부양이 고연령주부 및 저학력주부, 농촌주부, 맏며느리, 대규모가족, 고소득가구, 시부모가 재력을 보유한 가구, 그리고 전통적인 부양가치관을 보유한 주부들을 중심으로 잘 수행되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이에 대한 논의의 제시에서 상계연구(1998) 결과와의 상호비교가 수시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현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다는 사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시부 혹은 시모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부양태도는 상당히 현대적(시부 평균=15.957; 시모 평균=16.145) 임에 비하여<sup>20)</sup> 부양행위는 비교적 적극적(시부 평균=19.058 시모 평균=17.320) 인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상관관계(시부  $r=.398$ ; 시모  $r=.392$ ) 또한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현대적 유형의 부양태도와 적극적 유형의 부양행위가 동시에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노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관념 및 가치관이 이미 상당 부분 퇴색되고 현대적 유형의 의식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태도가 실제적 행동으로까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양행태에서는 전래의 관습이 아직도 비교적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상계연구(1998)에서 나타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이 타율적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임종권 외(1985)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간의 이와 같은 불일치현상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상계연구(1998)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시부모부양이 진정한 개체의식의 자발적 발로로써 수행되기보다는 자부로서의 부여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수동적 반응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며, 이는 주부들의 잠재적 역할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임과 동시에 그 같은 역할갈등이 가정불화의 형태로 표면화될 상시적 가능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sup>21)</sup>

둘째,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 각각의 하위 차원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양태도의 세 가지 하위 차원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부모<sup>22)</sup>에 대한 부양태도가 가장 현대적인 차원은 다름 아닌 경제적 부양(평균=4.972) 이었으며 신체·서비스 부양(평균=5.377)이 그 다음이었고 정서적 부양

20) 부양태도가 점차 현대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최근의 통계청(1999)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21)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상계연구(1998, p. 75)를 참조할 것.

22)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의 각 하위 차원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함에서 시부와 시모에 대한 부양을 구분하지 않고 '시부모'에 대한 부양으로 종합하여 논의하는 이유는, 연이어서 언급되고 있다시피, 시부와 시모 사이에 부양태도나 부양행위 그리고 선행요인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균=5.702)이 가장 덜 현대적이었다.<sup>23)</sup> 이러한 차이는 주부들이 시부모를 부양함에서 경제적 부양에 비해서보다는 정서적 부양을 제공해야 할 당위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양행위의 하위 차원들 가운데서는 정서적 부양(평균=7.010)이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경제적 부양(평균=6.085)과 신체·서비스 부양(평균=6.037)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었다. 이와같은 차이는 주부들이 실제로 시부모를 부양함에서는 물질적 도움이나 신체수발을 제공하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안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이 연구에 포함된 주부들은 경제적 부양에서는 여타의 차원들에 비하여 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하며 또한 실제로도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제공하는 한편, 정서적 부양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며 또한 실제로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4)</sup>

셋째,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와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선행요인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부모형과 시모모형을 별도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의 외생변인들이 부양행위에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는 두 모형간에 다소간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흡사했다. 즉,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 결정요인과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 결정요인 — 부양태도, 연령, 교육수준, 도시주부 여부, 맏며느리 여부, 가구원수, 가구수입, 시부모 소유재산 — 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또한 각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전체영향 계수의 절대값)에서도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커다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상계연구(1998)에서는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별도의 모형구성 필요성이 인정되

23) 부양태도의 세 가지 하위 차원들 모두 최소값은 4이고 최대값은 8이다.

24) 한편, 이러한 경향은 이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전체적으로 주부들의 시부모들은 그다지 심하게 연로하지 않은 노인들로써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이며 재력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양보다 정서적 부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여하튼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부양의 하위차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서병숙과 이신숙, 1990; 이가옥 외, 1990; 전길양과 김태현, 1993)와 일치하는 것이다.

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이 연구에 새로이 도입된 주요 개선사항들 가운데 하나인 “부양자의 동질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언컨대, 상계연구(1998)에서는 시부와 시모에 대한 부양자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아 이질적 부양자집단이 일부 포함됨으로써 피부양자에 따른 결과비교가 대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양자를 동질화시킴으로써 피부양자에 따른 결과비교의 대등성이 보장되었다. 이와같은 조건하에서 두 모형 사이에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가 공통의 선행요인을 공유하는 현상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부모부양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는 데 피부양자별로 별개의 모형이 구성될 필요성이 없으며 동일한 단일모형으로 피부양자 모두에 대한 부양행위가 설명 가능함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이와같은 결과는 모형 구성과 관련된 이론적 함의 이외에 자료수집과 관련된 경험적 함의까지도 지녀서, 조사실시 단계에서 피부양자별로 별도로 자료가 수집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넷째, 부양태도를 설명하는 인과적 요인과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인과적 요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모형추정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부양자 자신의 지속적·내재적 특성은 일차적으로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침에 비하여 부양자의 지속적·내재적 특성과 무관하게 혼입을 통하여 비로소 접하게 된 피부양자의 특성 혹은 가족내의 역할 및 상황 등은 부양태도보다는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실제로 발견되었다. 물론 이와같은 인과관계가 예외 없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컨대 부양자의 내재적·지속적 특성(연령 및 도시주부)이 부양행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또한 피부양자의 특성(시부 연령) 및 가족내 상황(가구원수)이 부양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일부의 예외적 인과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변인들은 부양행위보다는 부양태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변적이고 외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변인들은 부양태도보다는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앞서의 예측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와 연관된 인과요인의 차이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은 상계연구(1998)에서도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 있었다. 요컨대 앞에서 제시된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결과와 아울러 2회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밝혀진 인과요인의 차이는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가 서로 상이한 선행요인을 지니는 별개의 구성체로써 이들은 노인부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

형에 반드시 동시에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제시된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내린다면, 다음의 네가지 기준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 (1) 기본모형과 수정모형을 모형부합치 및 결정계수( $R^2$ )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수정모형은 모형부합치뿐 아니라 결정계수에서도 상당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sup>25)</sup> 이 연구에서 채택된 모형수정전략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증빙하고 있다. (2) 수정모형의 모형부합치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상이한 부합치에서 시부모형(GFI=.911, AGFI=.884, NFI=.745, CFI=.847, IFI=.856)과 시모모형(GFI=.930, AGFI=.911, NFI=.779, CFI=.889, IFI=.892) 모두 이론적 모형과 경험적 자료가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26)</sup> (3)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수정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시부모형에 설정된 외생변인들은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 각각이 지니는 변량의 42.3% 및 48.0%를 설명하고 시모모형에 설정된 외생변인들은 부양행위 및 부양태도 각각의 변량의 38.6% 및 46.5%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LISREL분석의 ML절차가 이론변인(*latent variables*)의 측정오차를 수정(*correct*) 시킴으로써 여타의 분석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계수를 제공한다는 원론적 사실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모형의 설명력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4) 수정모형에 설정된 인과경로들 가운데 이론적으로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로의 수에서, 시부모형의 경우에는 15가지 경로 가운데 10가지 경로가, 그리고 시모모형의 경우에는 14가지 경로 가운데 9가지 경로가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약 2/3 가량의 인과경로가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였는데, 이는 모형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제시된 모형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상계연구(1998)의 모형에 대한 평

25) 기본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할 때, 먼저 모형부합치에서 시부모형의 경우 GFI=.899, AGFI=.879, NFI=.731, CFI=.837, IFI=.848에서 GFI=.911, AGFI=.884, NFI=.745, CFI=.847, IFI=.856으로 향상되었으며 시모모형의 경우에는 GFI=.916, AGFI=.897, NFI=.772, CFI=.876, IFI=.884에서 GFI=.930, AGFI=.911, NFI=.779, CFI=.889, IFI=.892로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결정계수에서 시부모형의 경우  $R^2 = .416$ (부양태도),  $R^2 = .368$ (부양행위)에서  $R^2 = .423$ (부양태도),  $R^2 = .480$ (부양행위)으로 향상되었으며 시모모형의 경우  $R^2 = .378$ (부양태도),  $R^2 = .356$ (부양행위)에서  $R^2 = .386$ (부양태도),  $R^2 = .465$ (부양행위)로 향상되었다.

26) 모형부합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통계치들이 사용된 이유에 관해서는 상계연구(1998, p. 77)를 참조할 것.

가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모형부합치가 가일충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설명력도 향상되었으며 모형의 구성타당도 또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말할 나위 없이, 이와 같은 향상은 이 연구에 도입된 일련의 개선작업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즉, 미설정오류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함으로써 모형의 포괄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양자를 동질화시킴으로써 피부양자에 따른 결과비교의 대등성이 보장되었으며, 표준화된 측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뢰도 및 타당도가 가일충 향상되었다. 혹자는 이와 같은 향상이 기본적으로 증대된 표본크기(N)<sup>28)</sup>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표본의 크기가 증대될 경우 모형부합치 및 설명력, 구성타당도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기초적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에서 추정된 모형은 그와 같은 기초적 사실로만 단순히 치부해버릴 수 없을 정도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추후의 발전적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동일한 가족내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을 제시하는 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부양행태에 대한 세대간 인지불일치(*intergenerational perceptive discrepancies*)의 정도가 어떠하며 이와 연관된 제반현상들 — 예, 부양태도의 불일치와 부양행위의 불일치 사이의 연관성, 노인부양의 하위차원별 불일치의 양상, 세대간 인지불일치의 유관요인(*correlates*) — 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한 이론적 · 경험적 함의를 지니는 연구과제로써, 만일 일정한 체계적 불일치가 발견된다면 이는 학술적으로뿐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상계연구(1998)의 모형에 비하여 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복수의 반복적 검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론의 설득력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표본에 적용될 수 있을수록 증대된다 (Stinchcombe, 1968)는 원론적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연구의 모형이 추후의 지속적인 이론적 개발과 반복적 검증을 통하여 수정 · 보완되고 일반화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을

27) 비교를 위한 더 상세한 자료를 위해선 상계연구(1998, pp. 76~77)를 참조할 것.

28) 상계연구(1998)에서는 N=226(시부) 및 N=408(시모)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N=621(시부 및 시모)이었다.

것으로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행태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둘으로써 주부들의 현재적 부양의식 혹은 행태가 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부모부양은 부양자의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재정, 건강, 생활만족도 등과 일정한 관련을 지닌다는 기존의 주장(Brody, 1985; Pearlin et al., 1995; Strawbridge et al., 1997)을 고려할 때, 이와같은 연구주제들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 헌

- 경제기획원. 1988. 《사회통계조사》.
- 김상욱 · 양철호. 1998.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시부 및 시모에 대한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 35 호. pp. 51~83.
- 박재홍. 1993. “노인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pp. 303~338.
- 서병숙 · 이신숙. 1990. “농촌기혼여성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제 10 권. pp. 191~211.
- 성규탁. 1990.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 10 권. pp. 251~273.
- \_\_\_\_\_. 1995. “부모 부양의지의 비교문화적 고찰 :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우.” 박재간 외 편. 《고령화사회와 위기와 도전》 나남. pp. 287~311.
- 송현애. 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가옥 외. 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종권 외. 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장경섭. 1993. “가족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pp. 189~225.
- 장인협 · 최성재. 1994.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길양 · 김태현. 1993. “노모와 성인 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한국노년학》 제 13 권. pp. 17~38.
- 최성재. 1995. “한국의 노령화와 사회정책.” 《동·서양의 노령화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최재석. 1982. 《개정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통계청. 1992.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1998. 《한국통계연감》.
- \_\_\_\_\_. 1999. 《한국의 사회지표》.
- 한경혜. 1992. “농촌가족관계의 변화와 배경.” 《농촌생활과학》 제 13 권.
- 한국방송공사(KBS). 1999. 《노인상속에 관한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 한남제. 1989. 《현대 한국가족 연구》 일지사.
- Abel, E. K. 1991. *Who Cares For the Elderly : Public Policy and Experiences of Adult Daughters*.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Andrews, K. H. & D. B. Kandel. 1979. “Attitude and Behavior : A Specification of the 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 pp. 298~310.
- Antonucci, T. C. 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ition. Edited by R. H. Binstock & L. Georg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Antonucci, T. C., A. M. Sherman, & H. Akiyama. 199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Integration.” I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1. Edited by J. E. Birre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 505~515.
- Atchley, R. C. 1988. *Social Forces in Later Life*. Belmont, CA: Wadsworth.
- Blau, P.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Y: Wiley.
- Brody, E. M.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pp. 19~29.
- \_\_\_\_\_. 1990. *Women in the Middle : Their Parent Care Years*. NY: Springer.
- Brody, E. M., P. T. Johnson, M. C. Fulcomer, & A. M. Lang. 1983. “Women’s Changing Roles and Help to Elderly Parents :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8(5). pp. 597~607.
- Cicirelli, V. 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November). pp. 815~825.
- Cowgill, D. O. 1986. *Aging around the World*. Belmont, CA: Wadsworth.
- Cox, H. G. 1993. *Later Life*. 3r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ronbach, L. 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pp. 297~334.

- Doty, P., M. E. Jackson, & W. Crown. 1998. "The Impact of Female Caregivers' Employment Status on Patterns of Formal and Informal Eldercare." *The Gerontologist*. 38(3). pp. 331~341.
- Fishbein, M. &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allo, F. 198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s on the Health of the Elderly." *Social Work in Health Care*. 8(2). pp. 65~74.
- Hagestad, G. O. 1987. "Able Elderly in the Family Context : Change, Chance, and Challenges." *The Gerontologist*. 27. pp. 417~422.
- Hendricks, J. & C. D. Hendricks. 1981. *Aging in Mass Society : Myths and Realities*. Cambridge, MA: Winthrop.
- Homans, G. C. 1974.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NY: Harcourt, Brace, & Jovanovich.
- Jöreskog, K. G. & D. Sörbom. 1993. *LISREL8*.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ane, R. A. & R. L. Kane. 1987. *Long-Term Care : Principles, Programs, and Policies*. NY: Springer.
- Kinney, J. M. 1996. "Home Care and Caregiving." I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1. Edited by J. E. Birre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 667~678.
- Lang, A. M. & E. M. Brody. 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dl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February). pp. 193~202.
- Matthews, S. H., J. E. Werkner, & P. J. Delaney. 1989. "Relative Contributions of Help by Employed and Nonemployed Sisters to Their Elderly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44. pp. 36~44.
- Ogawa, N. & R. D. Retherford. 1993. "Care of the Elderly in Japan : Changing Norms and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pp. 585~597.
- Pearlin, L. I., C. S. Aneshensel, J. T. Mullan, & C. J. Whitlatch. 1995. "Caregiving and Its Social Support."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4th Edition. Edited by L. K. George and R. H. Binstock.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charlach, A. E. 1994. "Caregiving and Employment :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les?" *The Gerontologist*. 34(3). pp. 378~385.
- Schulz, R., C. A. Tompkins, & M. T. Rau.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Psychosocial Impact of Stroke on Primary Support Persons." *Psychology and Aging*. 19.

pp. 169~174.

- Schuman, H. & M. P. Johnson. 1976. "Attitude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pp. 161~207.
- Shanas, E. & G. L. Maddox. 1985. "Health, Health Resources, and the Utilization of Car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ition. Edited by R. H. Binstock & E. Shanas. NY: Van Nostrand Reinhold. pp. 697~726.
- Stinchcombe, A. L. 1968. *Constructing Social Theories*. NY: Harcourt, Brace, & World.
- Stoller, E. P. & K. L. Pugliesi. 1989. "Other Roles of Caregivers : Competing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44(6). pp. 231~238.
- Strawbridge, W. J., M. I. Wallhagen, S. J. Sherma, & G. A. Kaplan. 1997. "New Burdens or More of the Same? Comparing Grandparent, Spouse, and Adult-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7(4). pp. 505~510.
- Streib, G. F. & R. W. Beck. 1980. "Older Families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pp. 205~224.
- Whitlatch, C. J. and L. S. Noelker. 1996. "Caregiving and Caring." I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1. Edited by J. E. Birre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 253~268.

## Determinants of Housewives' Caregiv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in-Law (II)

### Development of a Causal Model

Kim, Sang-Wook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the second phase of the author's larger attempt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housewives' caregiving behavior to their elderly parents-in-law. Specifically, it revises and expands the previous model(1998) and develops a new one by rectifying the three major problems inherent in the previous study: (1) misspecification error; (2) non-equivalent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the father-in-law model and mother-in-law model that stems from the inclusion of heterogeneous group of caregivers; (3) measurement problems for the two endogenous variables of eldercare attitude and behavior. To do this, the current study proposes a more comprehensive model by additionally incorporating other salient exogenous variables, renders the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the father-in-law and mother-in-law models equivalent by including only homogeneous group of caregivers (i.e., only those housewives whose parents-in-law are both alive), and introduces standardized measurement scales for the endogenous variables. Estimation of the model in terms of maximum likelihood procedures in LISREL8 attests to a better overall performance over the previous model when judged from several criteria such a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model fit statistics, proportion of significant causal paths, and measurement properti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he variables. Interpretation of the findings suggests several salient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concern such crucial issues as the inconsistency between eldercare attitude and behavior, patterns of association among the subdimensions of eldercare, and the difference in the antecedents explaining attitude as opposed to behavior of eldercare. In particular, the finding that indicates almost no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between the father-in-law and mother-in-law models suggests a strong case to argue that caregiving behavior to fathers-in-law and mothers-in-law, respectively, is likely to be a uniform phenomenon sharing virtually the same antecedents, and that a unified single model is sufficient to account for caregiving behavior to both parties.